

국외지사주재원 윤리준수 및 회계청렴 서약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귀하

본인은 수출기업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초일류 수출신용기관 구현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이 필수요건임을 깨닫고, 부패척결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 국외지사주재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아래의 「국외지사주재원 윤리준칙」 및 「국외지사주재원 회계청렴준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국외지사주재원 윤리준칙」

제1조(윤리관 확립) 부정부패를 배척하는 결연한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며 주재국에서 공사를 대표하는 국외지사주재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성실·청렴한 근무자세를 견지한다.

제2조(법규준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재국 및 본국의 제반 법령과 공사내규를 준수하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고객중심경영) 내·외부 고객이 국외지사주재원의 존립이유이며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고객만족추구) 내·외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국외지사주재원은 신용조사, 사고조사, 채권회수 등의 업무수행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금품·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제6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국외지사주재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조하지 않는다.

제7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국외지사주재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공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